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칙

[시행 2022.12.03.] [학생회칙 2022.12.02. 전면 개정]

전문

우리 사회과학대학은 사회의 제 현상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지성의 전당으로, 인류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제반 현상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배양시켜 인간 사회를 밝고 맑게, 가치 있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지성인 양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사회과학대학 학생은 보편적 진리의 수호와 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함양하고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로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인간으로의 정진을 기본 기조로, 학내 민주주의의 기틀을 세우고 자주적이고 공정한 의사 결정을 보장하여 자유로운 진리 탐구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사회과학 대학 전체 학생의 자발적인 의지를 모아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칙을 2013년 11월 25일, 2015년 11월 30일, 2017년 06월 27일, [2022년 12월 02일](#)에 전면 개정한다.

목차

전문	1
제1장 총칙	3
제2장 회원	4
제3장 의결기구	5
제1절 통칙	
제2절 학생총회	
제3절 사회과학대학 학생대표자회의	
제4절 단과대학 운영위원회	
제4장 집행기구	12
제1절 학생회장·부학생회장	
제2절 학생회 집행부	
제3절 학과 및 학부 학생회	
제5장 대의원회	15
제6장 기타기구	18
제1절 비상대책위원회	
제2절 기타 특별기구	
제7장 재정	19
제1절 예산 운용	
제2절 감사	
제8장 선거	21
제9장 탄핵 및 해임	21
제10장 회칙 개정	23
부칙	25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이하 ‘본회’라고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의 창조적 학문탐구와 자유롭고 민주적인 자치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학풍과 대학문화를 건설하고 민주시민의 자질을 배양함으로써 사회발전과 진보적인 대중문화의 건설, 회원의 권리보호 및 이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 본회는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내에 둔다.

② 본회는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 전체로 구성한다.

제4조(권력) 사회과학대학 학생의 주권은 사회과학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이하 ‘회원’으로 한다)에 있고 그 권력은 사회과학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으로부터 나온다.

제5조(학교 당국과의 협의) ① 본회는 학교 당국에 대하여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지위를 가진다.

② 본회는 다음 각호의 안건을 심의하는 학교 당국의 제반 회의에 학생회장 또는 부학생회장, 학생회 간부, 대의원장 등 학생대표자가 참석하며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진다.

1.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후생 및 복지에 관한 사항

3. 학생 신분 및 본회의 활동 관련 학칙개정에 관한 사항

4. 사회과학대학 공간 조정에 관한 사항

5. 사회과학대학의 특성화 또는 장단기 발전에 관한 사항

6. 회원 다수의 요구에 의한 사항

7. 기타 본회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회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이익을

박탈하는 사항

제6조(교육과 학문의 권리) 회원은 교육과 학문의 권리를 가지며 본회는 그

자주성·전문성·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제7조(정보 보존 및 공개의 의무) 본회는 기구 운영에 관한 자료를 보존해야 하며 회원의 요청이 있을 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기구) 본회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학생자치기구를 다음 각호의 기구로 구성한다.

1. 의결기구: 학생총회, 학생대표자회의, 단과대학운영위원회
2. 집행기구: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학과 및 학부 학생회
3. 감사기구: 대의원회
4. 기타기구: 비상대책위원회, 기타 특별기구

제9조(기한) ① 본 회칙에 명시된 기한에 관한 규정들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제10조(공고) ① 본 회칙의 공고에 관한 규정들은 공고권자가 사회과학대학 건물 내 공간과 하나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에 공고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전시사변 및 이에 준하는 위기 사태의 경우에는 온라인 혹은 서면을 통해 공고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11조(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사회과학대학 학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 한다.

② 학사과정 휴학생의 경우 준회원이 되며 다음 각호에 명시된 회원으로서의 권리가 제한된다.

1.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각종 투표권 및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참가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준회원 중 정해진 기간에 정회원 등록 절차를 이행한 자는 정회원이 된다.

제12조(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회원은 본회의 주체가 되며 학생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은 본회 및 예하 자치기구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3. 회원은 본회 및 예하 자치기구의 활동과 관련된 의사결정 시 언제든지 의사를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4. 회원은 본회의 사업계획, 재정, 그 밖에 운영 전반에 대해 알 권리를 갖는다.
5. 본회의 회원은 회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안건을 제시할 수 있다.
6. 회원의 자율성에 반하는 부당한 침해가 있을 시 이의제기 및 시정요구의 권리를 가진다.
7. 언론, 출판,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13조(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1. 회원은 본회의 학생회칙 및 학생회칙에 의거하여 결정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2. 회원은 본회의 학생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제3장 의결기구

제1절 통칙

제14조(목적) 본회를 대표하는 의사를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의결기구를 둔다.

1. 학생총회
2. 학생대표자회의
3. 단과대학운영위원회

- 제15조(운영)** ①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는 학생총회이다. 다음으로 학생대표자회의, 단과대학운영위원회의 순서로 권한이 있다.
- ② 하위 의결기구와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의 내용이 충돌될 때는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이 우선한다.
- ③ 하위 의결기구에서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은 해당 의결기구보다 상위 의결기구에서도 의결할 수 있다.

제16조(의장) ① 본회의 의결기구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그 직무를 맡으며, 학생회장의 궐위 시 부학생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학생회장·부학생회장이 모두 궐위되었을 때에는 대의원장이 임시의장을 맡는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과대학운영위원회의 임시의장은 운영위원이 호선하여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 ③ 의장은 본회의 의결기구를 대표하여 민주적이며 공정한 회의를 진행할 의무를 진다.
- ④ 의장은 의사 진행을 위해 참관인 수를 제한하거나 발언권을 제한할 수 있으며, 회의장 안의 질서를 방해하는 참관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⑤ 의장은 특정 개인, 단체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될 때 해당 개인, 단체의 장이나 이에 준하는 자에게 발언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17조(의장의 직무 제한) ① 의장은 학생총회와 학생대표자회의를 주재하는 동안 토론에 참여할 수 없으며, 토론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주재자의 자리에서 나와야 하며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의장직을 수행하지 아니한다.

- ② 학생회장이 의장직을 수행하지 아니하고자 할 때에는 제16조의 1항 및 2항을 준용한다.

제18조(안건의 의결) ① 각 의결기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안건의 의결 시 의결 요건을 정한 기준이 되는 출석 구성원 수는 각 안건의 의결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③ 의결기구의 의결권은 해당 의결기구의 구성원이 평등하게 가지며, 직접 출석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제19조(회의의 공개) ① 의결기구의 회의는 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 ② 의결기구의 회의는 속기, 음성 녹음, 영상 촬영 등의 방식에 의해 회의록이 기록되어야 하며 회원의 열람 요청 시 의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개할 의무가 있다.

제2절 학생총회

제20조(지위 및 권한) 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회원 전체가 관련된 중대 사항을 토론하고 의결한다.

제21조(구성) 학생총회는 본회의 회원 전체로 구성한다.

제22조(의장) 학생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맡으며 절위 시에는 부학생회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단, 학생회장 탄핵 소추 시에는 대의원장이 임시의장이 된다.

제23조(소집) 학생총회는 다음 각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학생회장이 공고한다. 단, 5호 및 6호의 경우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한하여 적용한다.

1. 단과대학운영위원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
2. 대의원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
3. 학생대표자회의 재적 성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
4.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 요구
5. 학생회장의 소집 요구
6. 대의원장의 소집 요구

제24조(공고) ① 의장은 학생총회의 소집을 3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경우 학생회장이 즉시 소집할 수 있다.

② 공고의 내용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소집 근거
2. 소집 대상
3. 소집 일시 및 장소
4. 안건 및 세부 사항
5. 소집권자의 명의

③ 학생총회는 천재지변·전시사변 및 이에 준하는 위기 사태의 경우에는 온라인 혹은 서면으로 소집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의결) ① 학생총회 의결은 표결로 하며, 표결 방법은 기명으로 함이 원칙이다. 다만 중요한 안건으로서 학생총회에서 의결을 거친 사항에 한해서 의결 방법을 무기명으로 할 수 있다.

② 학생총회 의결은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의결 방법과 의결 결과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3일 이내 해당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제26조(의결권의 위임) ① 회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의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위임한 회원은 출석한 회원으로 간주한다.

② 회원의 의결 권한을 위임할 경우 위임 사유, 성명, 자필 서명을 포함한 위임장을 총회 공고 후부터 총회의 개의 전까지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안건의 위임) 의장은 학생총회가 개의되었으나 의결 정족수의 미달로 인하여 의결되지 못한 안건은 당해 학생총회의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 한하여 학생대표자회의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대표자회의를 소집할 때 해당 위임 사실을 소집 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3절 사회과학대학 학생대표자회의

제28조(지위 및 권한) 사회과학대학 학생대표자회의는 학생총회의 수임 기구로서, 사회과학대학 전반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및 결정하는 기구이다.

제29조(구성) 사회과학대학 학생대표자회의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1. 학생회장•부학생회장
2. 대의원장•부대의원장
3. 학과 및 학부 학생회장•부학생회장
4. 학과 및 학부 대의원

제30조(의장) 학생대표자회의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맡으며 궐위 시에는 부학생회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단, 학생회장 탄핵 소추 시에는 대의원장이 임시의장이 된다.

제31조(소집) 학생대표자회의는 다음 각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생회장이 공고한다. 단, 제5호 및 6호의 경우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한하여 적용한다.

1. 단과대학운영위원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
2. 대의원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
3. 학생대표자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4. 회원 2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 요구
5. 학생회장의 소집 요구
6. 대의원장의 소집 요구

제32조(공고) 학생대표자회의의 공고 절차는 본 회칙 제24조를 준용한다.

제33조(의결) ① 학생대표자회의 의결은 표결로 하며, 표결 방법은 기명으로 함이 원칙이다. 다만 중요한 안건으로서 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의결을 거친 사항에 한해서 의결 방법을 무기명으로 할 수 있다.

- ② 학생대표자회의는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의장은 의결 방법과 의결 결과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3일 이내 해당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제4절 단과대학 운영위원회

제34조(명칭) 운영위원회는 ‘사회과학대학 [단과대학] 운영위원회’(이하 ‘단운위’)라 칭한다.

제35조(지위 및 권한) 단운위는 본회의 의결기구이자 최고 운영기구이다.

제36조(의장) ① 단운위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맡으며 궐위 시에는 부학생회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 ② 의장은 단운위를 대표하여 민주적이며 공정한 회의를 진행할 의무를 진다.
- ③ 의장은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운영위원 전반에 대해 운영위원의 동의를 받아 출석권 및 발언권을 제한할 수 있다.

제37조(구성)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단운위의 의결단위가 된다. 각 의결단위는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1. 학생회장
2. 부학생회장
3. 각 학과 및 학부 학생회장단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단운위의 운영위원회가 된다.

1. 학생회장
2. 부학생회장
3. 학과 및 학부 학생회장
4. 학과 및 학부 부학생회장

③ 이외에도 의장 직권으로 특별기구의 장, 본회의 집행부, 대의원회 등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출석자는 의결권이 아닌 발언권만을 지닌다.

제38조(회의) ① 단운위는 분기별 최소 3회 이상 개회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본회의 회원 누구나 참관할 수 있다. 다만, 회의 중 발언은 의장의 동의하에 가능하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결단위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비공개 회의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의 참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능하다.

④ 단운위의 회의록은 속기, 음성 녹음, 영상 촬영 등의 형식으로 기록되어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을 시 이를 3일 내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39조(업무 및 권한) 단운위는 다음 각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1. 본회의 전반적인 사업 계획 심의
2. 본회의 예산 및 결산안의 검토·조정
3. 회칙 개정안의 발의
4. 당해 연도 학생회비 일체 결의안
5. 학생총회, 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총회의 소집 요구

6. 사회과학대학 전체 학생 여론 수렴
7. 사회과학대학 대의원장단에 대한 탄핵 발의권
8. 본회 회칙의 유권해석권
9.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권

제40조(의사정족수) ① 단운위는 의결단위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개회 정족수에

미달하였을 경우 즉시 휴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과 및 학부 학생회장의 부재 시 운영위원회인 학과 및 학부 부학생회장의 대리 참석도 인정한다.

제41조(의결) 단운위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제39조 4호에 근거한 학생회비 일체 결의안
2. 이미 의결된 사안에 대한 재의결
3. 제42조 제2항의 4호에 근거한 운영위원회 자격 박탈

제42조(운영위원회의 징계) ① 단운위는 운영위원회가 본 회칙 혹은 학과 및 학부의 회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자격 박탈

③ 의장은 징계안이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징계안을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해야 한다.

1. 징계 대상
2. 징계 종류
3. 징계 사유

4. 정계안의 의결 결과

제43조(운영위원 자격의 회복) ① 자격이 박탈된 운영위원의 자격 회복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통해 가능하다.
② 의장은 운영위원 자격이 회복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자격 회복의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제4장 집행기구

제1절 학생회장·부학생회장

제44조(지위 및 역할) ① 학생회장은 사회과학대학 전체 회원과 본회를 대표하여 본회의 제반
활동을 총괄하며 본회와 관련된 사항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의무를 지닌다.
② 학생회장은 학생총회, 사회과학대학 학생대표자회의, 단과대학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중앙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부학생회장은 본회의 제반 활동 및 본회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회장과 협의·협력하고,
학생회장의 부재 시 권한을 대행한다.

제45조(임기)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의 임기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46조(신분보장)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은 탄핵 또는 사퇴에 의하지 않고는 부당하게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제47조(권한) 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본회의 대표업무 및 운영 총괄
2. 단과대학운영위원회, 대의원회 소집요구권
3. 학생총회, 학생대표자회의 소집요구권
4. 본회의 집행부 및 수습 간부, 특별기구 장 등의 임명권
5. 회원의 권리보호와 관련된 학교 당국과의 협의권

제48조(의무) 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학생회장은 회원의 요구에 부합해야할 의무를 지닌다.
2. 학생회장은 본회를 수호하며 회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3. 학생회장은 회원의 요구에 응해 대학 당국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의무를 지닌다.

제49조(지위의 승계) ① 학생회장의 궐위 시 부학생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정·부 학생회장 모두 궐위 시 단운위 운영위원 중 1인을 선출하여 직무를 대행하며, 본회의 제반 업무는 학생회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이 승계한다.
- ③ 제1항과 2항에도 불구하고 학생회장의 궐위 이후 잔임 기간이 120일 이상일 경우 사회과학대학 선거시행세칙 제18조 제1항에 따른다.

제50조(사퇴) ① 학생회장·부학생회장이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사퇴 사유가 포함된 사퇴서를 대의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대의원장은 학생회장·부학생회장이 사퇴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제2절 학생회 집행부

제51조(지위) ① 본회의 의결사항 및 제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학생회 내의 집행부서를 둔다.

- ② 각 부서의 설치, 구성, 직무범위, 역할은 학생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2조(기구) 본회는 다음과 같은 집행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획국: 각종 사업의 기획 및 집행 업무 담당
2. 사무국: 각종 사업의 제반 사무업무와 예산의 집행 및 결산 담당
3. 홍보국: 각종 사업의 제반 홍보업무 담당
4. 문화체육국: 문화예술·체육활동 관련 사업 담당
5. 연대사업국: 각종 사회적 연대 활동에 관한 사업 담당
6. 복지국: 복지활동 관련 사업 담당
7. 기타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부서

제53조(구성) ① 모든 집행부의 임원은 학생회장이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학생회장은 본회의 의결기구를 통해 임원의 임명 사실을 보고해야 하며, 모든 의결기구는 각각의 임명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학생회장은 임기 시작 이후 각국의 인원 및 지위 변동 등이 있을 때 본회의 의결기구를 통해 해당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제54조(기능) 집행부는 학생회칙과 학생회칙에 의거하여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며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의 총괄하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총회, 학생대표자회의, 단과대학운영위원회 의결 사항 집행
2. 학생회장·부학생회장이 결정한 업무 집행
3. 사회과학대학 전체 학생 여론 수렴
4. 본회의 활동과 관련된 학교 당국과의 협의 업무
5. 기타 본회의 사업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55조(회의) ① 회의는 분기별 최소 3회 이상 개회해야 한다.

- ② 회의는 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여 본회의 회원 누구나 참관할 수 있다. 다만, 회의 중 발언은 의장의 동의하에 가능하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비공개 회의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의 참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능하다.
- ④ 회의록은 속기, 음성 녹음, 영상 촬영 등의 형식으로 기록되어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을 시 이를 3일 내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6조(사퇴) 집행부의 임원이 해당 직을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사퇴 사유가 포함된 사퇴서를 학생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7조(집행부의 임기 종료) ① 당해 연도 학생회장단의 임기가 종료되었을 때 당해 집행부서는 특별한 절차 없이 해산한다.

- ② 당해 연도 집행부의 임원진은 후임 집행부로의 원활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후임 집행부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3절 학과 및 학부 학생회

제58조(지위) 학과 및 학부 학생회는 각 학과 및 학부의 최고 학생기구이다.

제59조(구성) 학과 및 학부 학생회는 각 학과 및 학부 학생 전체로 구성한다.

제60조(회장) 학과 및 학부 학생회장은 각 학과 및 학부 학생 전체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단운위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61조(학생회칙) ① 각 학과 및 학부 학생회는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회칙과 조직을 가질 수 있으며 본 회칙과의 충돌 시 각 학과 및 학부의 학생회칙을 우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과 및 학부 학생회칙의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 회칙을 따르도록 한다.

제62조(자격) 사회과학대학 소속 및 학과 학부는 인원수에 상관없이 사회과학대학 내 모든 의사결정에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

제5장 대의원회

제63조(지위) 대의원회는 본회의 최고 감사기구이자 자문기구이다.

제64조(의무) ① 대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으며 회원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의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은 외부업체와 계약이나 그 처분 때문에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제65조(구성) 대의원회는 대의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은 각 학과 및 학부에서 원칙상 1인을 선출한다. 당해 입학 정원이 100인 이상의 경우에는 최대 2명을 선출할 수 있다. 단 의결권은 각 학과 및 학부에서 1개만 가진다.

제66조(겸직 금지) 대의원은 단과대학 운영위원회 위원, 학생회 집행 간부, 특별기구 임원을 겸할 수 없다.

제67조(기구) 대의원회는 의장 1인, 부의장 1인과 의장이 임명한 감사국장, 사무국장, 서기 등의 집행 간부를 둘 수 있으며 집행 간부들은 대의원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제68조(직무) 대의원회 의장은 대의원회의 의무를 총괄하며 부의장은 이를 보좌하고 의장의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9조(선출) 대의원회 의장은 입후보하여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사회과학대학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제70조(임기) ① 대의원회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탄핵이나 사퇴에 의하지 않고는 부당하게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제71조(지위의 승계) ① 대의원의 궐위 시 다음 각호의 경우를 따른다.

1. 의장 궐위 시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부의장의 궐위 시 대의원 중 1인을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의장과 부의장 모두 궐위 시 대의원회 간선을 통해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4. 학과 및 학부 대의원의 경우 학과 및 학부 학생총회를 통해 선출한다. 단 학생총회가 개의되지 못했을 경우 전임자가 지명하며, 이를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의원의 궐위 이후 잔임 기간이 120일 이상일 경우 사회과학대학 선거시행세칙 제18조 제1항에 따른다.

제72조(역할 및 권리) 대의원회의 역할 및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회칙개정 발의 및 의결
2. 사업계획 및 사업평가서의 심의 및 의결
3. 정·부학생회장의 탄핵^{발의} 및 의결권
4. 회계, 서무 및 기타업무에 관한 감사
5. 선거 공약에 관한 감사
6. 예산안과 결산안의 심의 및 의결, 승인
7. 정·부학생회장 및 학생회 집행부, 학과 정·부학생회장 및 집행부 출석 요구

8. 집행부의 해임 의결
9.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및 산하 자치기구에 대한 선거관리권
10. 수익사업에 관한 감사, 심의, 의결, 승인
11. 회계 문서 보존: 문서 열람 시 대의원회 중 1인이 참관하며 자료의 반출은 금한다.

제73조(감사) 대의원회에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단과대학 학생회, 학과 및 학부, 대의원회 등을 감사할 수 있다. 감사에 관한 세부 사항 사회과학대학 감사시행세칙을 따른다.

제74조(선거관리) 대의원은 사회과학대학 학생자치기구의 선거관리권을 가지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회과학대학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제75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의장이 매 학기 중 1회 이상 소집하여야 한다.

제76조(임시총회) 다음 각호의 경우 대의원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대의원회 의원 3인 이상의 요구
3. 단과대학운영위원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
4. 학생회장의 소집 요구
5. 회원 2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 요구

제77조(최초회의) 회기의 최초회의는 전임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78조(의결) 대의원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의결된 사안에 대한 재의결
2. 본 회칙 제109조에 근거한 탄핵 및 해임안의 의결
3. 학생회칙 개정안의 의결

제6장 기타기구

제1절 비상대책위원회

제79조(목적)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자치기구장 미선출 또는 탄핵 시, 회원들의 권리보호 및

이익증진을 위하여 본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기구이다.

제80조(구성) 회원 중 최소 3인 이상의 비상대책위원과 1인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81조(위원장의 선출) ① 학생회장 미선출 시, 전임 학생회장이 단과대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지명한다. 대의원장의 경우 전임 대의원장이 대의원회의 동의를 받아 지명한다.

② 지명을 받은 비상대책위원장 후보자는 3일 이내 해당 사실을 대의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대의원회는 차기 비상대책위원회 설립 공고를 5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③ 학생자치기구장 탄핵 의결 시, 학생총회를 통해 비상대책위원장은 선출한다.

제82조(역할) 비상대책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학생회의 역할과 권한을 대행한다.
2. 학생회비 계좌는 위원장의 명의로 하되, 예산 운용 시 대의원장의 감독하에 집행한다.
3. 학생회비 집행, 사업 진행에 있어서 사회과학대학 감사시행세칙에 따라 감사를 받는다.
4. 차기 자치기구가 출범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83조(임기) ①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선거를 통한 차기 자치기구 성립 시까지로 하며, 최대 90일로 제한한다. 단, 사회과학대학 선거시행세칙 제18조 제2항의 경우 재·보궐 선거 시행 시까지 유지될 수 있다.

②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가 종료된 이후에도 차기 학생회가 출범할 수 없는 경우, 의결기구의 동의를 받아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2절 기타 특별기구

제84조(목적) 학생회장은 본회의 사업 집행을 위하여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85조(설치) ① 학생회장은 각 사업의 집행을 위한 프로젝트 팀, 집행위원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기구의 장은 학생회장이 임명하며 예하의 집행간부를 임명할 수 있다.

③ 각 특별기구의 구성, 직무 범위, 역할은 학생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6조(직무) ① 모든 특별기구는 학생회칙 및 학생회칙에 의거한 사항을 준수하며 특별기구의 장의 총괄하에 특별기구의 사업을 진행한다.

② 특별기구는 당해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단과대학운영위원회, 대의원회 등의 기구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장 재정

제1절 예산 운용

제87조(목적) 본 장은 본회 및 산하 자치기구의 예산 운용과 이에 관련되는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88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89조(재원) 본회의 운영경비는 다음과 같은 예산으로 운영한다.

1. 학생회비
2. 수익사업 이익금
3. 각종 행사의 격려금 및 후원금
4. 각 행사별 회원이 낸 회비
5. 전년도 이월금
6. 기타 자체조달경비

제90조(목적 외 사용금지) 본회의 경비는 본회 활동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91조(공개) 본회의 예산에 관한 운용 및 결산 사항, 감사 자료의 공개를 회원 또는 대의원회가 요구할 경우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92조(계좌) 본회의 예산과 관련한 계좌는 하나의 계좌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좌 설립 시 계좌 번호를 대의원회에 보고해야 하고, 통장 비밀번호, 카드 비밀번호를 대의원회의 요청이 있다면 알릴 의무가 있다.

제93조(업무추진비) 본회는 업무의 능동적인 추진을 위해 충남대학교 감사시행세칙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제94조(수익사업) 대의원회를 제외한 본회 및 산하 자치기구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을 예외 없이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5조(대의원회 운영비) 대의원회 운영비는 총대의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또는 학생회장과 대의원장의 합의를 통해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96조(문서보존) 회계장부 및 영수증 등 감사 자료의 문서보존 기한은 3년으로 하며 이는 대의원회에서 보관한다.

제97조(학과 학생회비) 학과 학생회비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과의 기준에 따르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본회는 학과 학생회비를 통한 단대운영지원금, 사업별 각출 등을 학과에 요구할 수 있다.

제98조(학과 학생회비 반환) ① 학과 회원이 회원의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에는 회원이 학생회비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학과 학생회비 반환은 한 학기 단위로 반환해줘야 한다. 단, 이 경우 재적증명서를 확인 후 반환이 가능하다.

②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학생회비가 회원에게 적절히 사용되지 못한 경우 회원이 학생회비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학과 학생회비 반환은 납부한 학생회비를 한 학기 단위로 나누어 반환이여야 한다. 단, 이 경우 2020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되며, 반환은 학기가 끝난 후 진행한다.

제2절 감사

제99조(목적) 본 장은 본회 및 산하 자치기구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널리 알리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0조(감사 시행) 대의원회는 사회과학대학 감사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사회과학대학 학과 및 학부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장 선거

제101조(목적) 본 장은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생자치기구 선거를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2조(선거 시행) 대의원회는 사회과학대학 학생자치기구의 선거를 사회과학대학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제9장 탄핵 및 해임

제103조(목적) 본 장은 본회 및 산하 자치기구의 집행부, 대의원회의 직무집행에 있어서 학생회칙을 위배하는 부정을 방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04조(탄핵 및 해임의 대상) ① 탄핵의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단, 제2호와 4호의 경우 학과 및 학부의 회칙을 따르되 해당 회칙에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본 회칙을 따른다.

1.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2. 학과 및 학부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3. 대의원장, 부대의원장
4. 학과 및 학부 대의원

② 해임의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학생회 집행부
2. 특별기구의 장 및 임원
3. 대의원회 집행부

제105조(시한) 탄핵 및 해임안의 발의부터 **의결**까지 14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6조(발의) ① 탄핵 대상자가 학생회칙에 반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였을 경우 다음 각호 중 하나 이상의 요건으로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다.

1.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요구
2. 단과대학운영위원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요구
3. 대의원회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요구
4. 학생대표자회의 재적 회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요구
5. 학생총회의 의결 사항으로써 의장의 직권 발의

② 해임 대상자의 경우 다음 각호 중 하나 이상의 요건으로 해임안을 발의할 수 있다.

1. 회원 2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요구
2. 단과대학운영위원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요구
3. 대의원회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요구
4. 학생대표자회의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요구
5. 학생총회의 의결 사항으로써 의장의 직권 발의

③ 대의원장은 탄핵 및 해임안이 발의된 날로부터 3일 이내 해당 사실을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단, 대의원장 탄핵안의 발의 시 학생회장이 공고한다.

제107조(권한 정지) 탄핵 및 해임의 발의를 받은 자는 탄핵안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이 정지된다.

제108조(소명서의 제출) 탄핵 및 해임안의 발의를 받은 자는 탄핵안의 **의결** 전까지 대의원회에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소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명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09조(탄핵안의 의결) ① 탄핵 및 해임안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05조에도 불구하고 탄핵 및 해임안의 의결이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의장은 학생총회를 소집하여 탄핵안을 의결할 수 있다.

제110조(이의제기) ① 다음 각호의 신청권자는 탄핵안의 의결에 대해 대의원회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

1.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요구
2. 단과대학운영위원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요구
3. 대의원회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요구
4. 학생대표자회의 재적 회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요구
5. 학생총회의 의결 사항으로써 의장의 직권 발의

② 대의원회는 이의제기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를 재심하여야 한다.

③ 재심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10일 이내에 학생총회를 통해 의결한다.

제111조(징계안의 건의) 대의원회는 탄핵 사유와 관련하여 학교 당국에 징계를 건의할 수 있으며 법적 문제가 발생 시 사법당국에 고소, 고발, 수사 의뢰 등을 할 수 있다.

제10장 회칙 개정

제112조(발의) 본회의 회칙 개정 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학생회장의 직권 발의
2. 대의원장의 직권 발의
3.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요구
4. 단과대학운영위원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요구
5. 대의원회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요구

제113조(공고) 회칙 개정안을 발의한 자는 다음 각호의 서식을 포함한 문서를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개정안
2. 회칙 개정안의 발의 이유 및 주요 내용
3. 신·구조문 대조표
4. 회칙 개정의 발의자 명단

제114조(심의) 공고된 회칙 개정안은 공고된 날로부터 7일 이상 단과대학운영위원회 및 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5조(의결) 회칙 개정안은 공고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호 중 하나의 절차를 거쳐 의결되어야 한다.

1. 학생총회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
2.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제116조(공포) ① 대의원회는 회칙 개정안이 의결된 날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공포한다.

② 회칙 개정의 공포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구조문 대조표
2. 회칙 개정안 전문
3. 회칙 개정안 의결 결과

③ 대의원장은 회칙 개정 공포문을 공포된 날로부터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117조(효력 발생) 개정 의결된 회칙은 공포와 함께 효력이 발생한다.

제118조(회칙의 정리) ① 대의원회 및 단과대학운영위원회는 학생회칙의 조문 체제 변경 또는 자구 수정 등 회칙의 실질적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칙을 정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칙을 정리하는 경우, 수정 즉시 그 사항을 의결기구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9조(회칙 및 세칙의 유권해석) ① 대의원회 및 단과대학운영위원회는 회칙 및 학생회칙에 의거한 세칙의 해석에 다툼이 생겼을 때 조항에 대한 해석을 논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대의원회 및 단과대학운영위원회는 회칙 및 세칙에 있어서 본회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 등의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 본 회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 본 회칙은 소급 적용치 아니한다.

제3조(개정) 2022년 12월 02일